

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10월 6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한 책무에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시장이 담당해야 할 책무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관계자의 책무를 시장의 책무로 하고, 시장은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7일(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장(참조 : 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45, 팩스 032-440-8766, 이메일: jaemoni@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사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 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금용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67
----------	-----

발의연월일: 2016. 10. 5.

발 의 자: 김금용·손철운·

박종우 의원

(찬성자: 5명)

1. 제안이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한 책무에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시장이 담당해야 할 책무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관계자의 책무를 시장의 책무로 하고, 시장은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9조, 제22조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교통 안전을 위하여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관계자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역시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여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등 어린 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 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 린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교통안 전에 관한 교육 등 어린이 교통 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 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삭제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인천광 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은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 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 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u>시장</u> --- ----- ----- ----- -----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 제22조(조례)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

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
-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 가. 소류지(小溜池)·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 다. 농업자재의 관리
-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 바. 농가 부업의 장려
- 사. 공유림 관리
-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 자. 가축전염병 예방
-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 타. 중소기업의 육성
-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 하. 우수토산물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 가. 지역개발사업
-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 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개수(改修) 및 유지
-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타.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파.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
과 운영 및 지도·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 개정안 제3조(시장의 책무)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못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관련 자료 제시)

- 개정안의 내용이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비용산출이 불가능함.

4. 작성자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최강환